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3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9.
3. 회부연월일 : 2025.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주차금지의 장소에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u><신 설></u>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입·출구</u> 2. · 3. (현행과 같음)

최근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과태료 부과 등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출구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¹⁾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²⁾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해당 운전자 등을 처벌³⁾할 수 있지만, 주차장 입구·출구가 막혀 있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됨.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금지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주차금지 장소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주차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
- 1) SBS뉴스 2024년 4월 29일 기사, “‘딱지 떼기 전까지 안 비켜’...주차장 입구 ‘길막’ 입주민, 처벌은?”
한국경제신문 2023년 2월 4일 기사, “‘과태료 못 내’ 주차 빌런...아파트 출입구 막은 벤츠에 ‘분통’”
- 2)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3) 연합뉴스 2025년 4월 25일 기사, “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셋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4)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⁵⁾의 입구·출구를 추가함으로써, 주차장 입·출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상 장애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는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므로, 개정안을 통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⁶⁾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중략)… 제32조, 제33조, …(중략)…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5)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⑪ (생략)

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5412) 제6조의3(주차장에서

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주차금지 장소는 주차된 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성·심각성이 큰 장소(터널 안 및 다리 위 등)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주차 시 통행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외주차장 등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와는 성격 및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함께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경찰청은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

의 금지행위)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리방법)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지방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시행예정인바, 별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